

- 제13조(사무국) ① 위원장은 협회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고, 사무국은 협회회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운영 및 총괄한다.
-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등 상근직원을 둘 수 있으며, 그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정한다.
- ③ 사무국장은 협회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.
-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.

- 제14조(관계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등) ① 시장은 원활한 노사 현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사무국에 파견할 수 있다.
- ② 협회회의 위원장은 원활한 노사 현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립하는 공사·공단,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 등에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5조(중전의 제12조)제1항 중 “협회등”을 “협회등 및 실무위원회”로 한다.

제16조(중전의 제13조) 중 “협회의 운영”을 “협회 및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◆ 서울특별시조례 제7385호

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19년 12월 31일
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

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

1. 개정이유

많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들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바, 그 후손들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고 독립

유공자 후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지원사업에 생활지원수당 지급을 신설함

- (1) 지급대상은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%이하인 사람으로 하고,(제3조제1항제5호)
- (2) 수당은 월 20만원씩 지급하도록 함(제3조제1항제5호)

나.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

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월20만원의 생활지원수당 지급

- 가.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
- 나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인 사람

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그 밖에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◆ 서울특별시조례 제7386호

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19년 12월 31일
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